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 산업자원부 자료 제공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 “1천제곱미터 이내”를 “2천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7조의3, 제9조의2,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형 및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심의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체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업종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15조의2(국·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6조제1항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업태(제3조관련)”를 “종류(제3조제1항 관련)”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할인점”을 “대형마트”로 하며, 동호중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시설 기준	1. 강의실 면적 : 100㎡ 이상 2. 사무실 면적 : 16㎡ 이상 3. 휴게실 면적 : 10㎡ 이상
강사 기준	1. 전임강사(1인 이상)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시간강사(3인 이상)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연수실적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법 제8조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4.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52조 제1항제4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52조 제1항제6호	300만원